

|           |                    |        |
|-----------|--------------------|--------|
| 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항 |
| 의 결 연 월 일 | 2021. . .<br>(제 회) |        |

물 관 리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br>(환경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1. . .           |

법 제 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19.6월)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 운영체계 등을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분과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10조제1항)

물관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며 시행령에서는 분과위원회를 계획 관련, 물분쟁 조정 관련, 그 밖의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 운영 체계는 계획·물분쟁 조정·정책분과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책분야를 법령에 명시하여 정책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나. 사무국의 지원체계 강화(안 제11조제5항, 제6항)

사무국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다양한 분야의 물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다. 다른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3조제4항제4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8284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라. 물분쟁 조정 사건의 이송규정 신설(안 제16조제8항, 제9항)

1) 신청인이 조정권한이 없는물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을 경우  
조정권한이 있는물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이송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송에 걸린 기간은  
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마. 출석을 요구 받은 자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신설(안 제20조제2항, 제3항)

물분쟁 조정 사건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일시에 대해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없 음

##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련”을 “관련 분야, 정책 관련”으로 한다.

제1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무국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의 안건의 작성  
· 검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 국토연구원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4. 국립환경과학원
5. 한국환경공단
6. 한국수자원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8.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⑥ 사무국은 제5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제16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물분쟁 조정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조정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 법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유역을 관할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각각 14일 이내에 이송해야 한다.

⑨ 물관리위원회는 제8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접수일부터 이송일까지의 기간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정기간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제2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자는 부득이한 경우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출석일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하며, 물분쟁 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

에서 출석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계획 <u>관련</u> 분야, 물분쟁 조정 분야 및 그 밖의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br>----- <u>관련 분야</u> ,<br><u>정책 관련</u> -----<br>-----<br>-----.          |
| ② ~ ⑦ (생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① ~ ④ (생략)                                                                                              |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⑤ 사무국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의 안전의 작성·검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u>한국건설기술연구원</u>                                          |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u>한국환경연구원</u> , <u>한국농촌경제연구원</u> 또는 국                           |

<신 설>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1. ~ 3. (생략)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5. ~ 14. (생략)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① ~ ⑦ (생략)

<신 설>

토연구원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4. 국립환경과학원

5. 한국환경공단

6. 한국수자원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8.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⑥ 사무국은 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5. ~ 14. (현행과 같음)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물분쟁 조정사건의

|                                                          |                                                                                                                                                       |
|----------------------------------------------------------|-------------------------------------------------------------------------------------------------------------------------------------------------------|
|                                                          | <p><u>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 제 32조제2항에 따른 조정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 법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유역을 관할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각각 14일 이내에 이송해야 한다.</u></p> |
| <p><u>&lt;신 설&gt;</u></p>                                | <p><u>⑨ 물관리위원회는 제8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접수일부터 이송일까지의 기간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정기간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u></p>                             |
| <p>제20조(자료제출·출석의 등) ① (생략)</p> <p><u>&lt;신 설&gt;</u></p> | <p>제20조(자료제출·출석의 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제1항에 따라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자는 부득이한 경우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출석일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u></p>       |
| <p><u>&lt;신 설&gt;</u></p>                                | <p><u>③ 물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u></p>                                                                                       |

|                |                                                                                                                                       |
|----------------|---------------------------------------------------------------------------------------------------------------------------------------|
| <p>② (생 략)</p> | <p><u>여부를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br/>정하는 서식에 따라 통보해야<br/>하며, 물분쟁 조정의 목적을 달<br/>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출석<br/>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u></p> <p>④ (현행 제2항과 같음)</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환경부 심의지원소통팀 |                  |
| 연 락 처       | (044) 201 - 8934 |